2025년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 ※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둘 중 높은 가산세(1%) 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배제).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 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모두 적용한다(중복적용).
- ※ 식대금액의 지급명세서 제출 식대의 경우 2023년부터 비과세소득 지급현황 파악을 위해 식대금액의 경우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시 금액작성에 유의해야 한다 (2023.2.28. 이후 적용).

[필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비과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포함 여부

법 조 문	비과세 항목	포함 여부
소득법 12조 3호 가목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소득법 12조 3호 나목	법률에 따라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득법 12조 3호 다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득법 12조 3호 라목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득법 12조 3호 마목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득법 12조 3호 바목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득법 12조 3호 사목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득법 12조 3호 아목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11조)	0
소득법 12조 3호 자목	소득령 12 2~3(일직료·숙직료 등)	×
	소득령 12 3(자가운전보조금)	×

법 조 문	비과세 항목	포함 여부
	소득령 12 4·8(법령에 의해 착용하는 제복 등)	×
	소득령 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0
	소득령 12 12 가(연구보조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0
	소득령 12 12 가(연구보조비) - 고등교육법	0
	소득령 12 12 가(연구보조비)-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0
	소득령 12 12 나(연구보조비 등)	0
	소득령 12 12 다(연구보조비 등)	0
	소득령 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0
	소득령 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 인건비)	0
	소득령 12 14(취재수당)	0
	소득령 12 15(벽지수당)	0
	소득령 12 16(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0
	소득령 12 17(정부 · 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 전지원금)	0
	소득령 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 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0
소득법 12조 3호 차목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0
소득법 12조 3호 카목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득법 12조 3호 타목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득법 12조 3호 파목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0
소득법 12조 3호 하목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소득법 12조 3호 거목	소득령 16 ① 1(국외 근로 보수) 100만원	0

법 조 문	비과세 항목	포함 여부
	소득령 16 ① 1(국외 근로 보수) 300만원	0
	소득령 16 ① 2(국외근로)	0
소득법 12조 3호 너목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법 12조 3호 더목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0
소득법 12조 3호 러목	비과세 식사대(월 20만원 이하)	0
	현물 급식	×
소득법 12조 3호 머목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월 10만원 이내)	0
소득법 12조 3호 버목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득법 12조 3호 서목	교육기본법 28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0
소득법 12조 3호 어목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0
소득법 12조 3호 저목	사택제공이익, 주택자금 저리·무상 대여이익 등	×
소득법 12조 3호 자목	소득령 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0
구 조특법 15조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0
조특법 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0
조특법 88조의4 6항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75%, 100%)	0
조특법 18조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50%, 70%)	0
조특법 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0
조특법 29조의6	중소기업·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 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30%, 50%, 90%)	0
조특법 18조의3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0
조특법 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50%, 70%, 90%)	0
조세조약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 교수)	0

11 기타의 세무서 제출서류

(1) 의료비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 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득령 118조 의5 3항).

(2) 기부금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 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득령 118조의7, 2항).

12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비거주자의 연말정산은 거주자의 방식과 다르므로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매우 중요 하다. 구분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한다(소득법 1조의2, 소득령 2조).